

## 「순천만정원 사랑 적금」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“순천만정원 사랑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한다.

### 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및 법인으로 한다.

### 제3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예금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한다.

### 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다.

### 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한다.

### 제6조 적립방법

- ① 고객은 이 예금 가입 시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매월 월 적립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서 적립방법을 선택한다.
- ② 고객이 제①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이 예금의 계약기간의 2/3 경과 시부터 만기 직전까지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액 합계는 그 이전 적립한 금액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고객이 제①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 금액은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.

### 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로 썬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한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 이자율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③ 이 예금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④ 은행은 개인가입자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.2%의 우대이자율을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.
  - 1. 순천시민으로 순천사랑 서약서 작성 또는 순천지역 관광 입장권(또는 관련 영수증) 제시 시 연 0.1%
  - 2.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당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연 0.1%

## 제8조 기타

은행은 이 예금의 2014년 1년간 평균잔액의 0.1%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순천시에 기부금으로 제공한다.  
단, 2회 미만 불입한 계좌의 경우 평균잔액 산정 시 제외한다.

### <부칙>

본 약관은 2014년 4월 2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### 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